의 안 번 호	5100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제출 연월일	2026. 9.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00

제출연월일 : 2026. 9. 18.

제출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제4조제1항, 별표 3)

○ 총 계 : 1,131

○ 일반직 계 : 912

- **4급** : 15 → **16** / 본청(직속기관 포함) 14 → 15
- **5급이하** : 892 → **891**

○ 특정직 계(교육전문직원) : 213

- **일반직4급상당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12 → 13 / 본청(직속기관 포함) 12 → **13**
- **일반직5급상당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01 → **2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대조표(붙임 1)

2) 입법예고: 2026. 8. 5.(수) ~ 8. 17.(월), 특이사항 없음

3) 부서협의

- 규제영향분석: 규제사무 해당없음(조직예산과-5385, 2026.8.4.)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비대상)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미래기획관-5623, 2026.8.4./2026A세종교육-007)

4)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3)

4. 붙임 : 조례안, 신·구대조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1,13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912**			
3급	3		3	
4급	16	1	15	
5급이하	891	-		
전문경력관	2	-		
별정직 계	**4**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3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		
특정직 계 (교육전문직원)	**213**			
일반직4급상당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3		13	
일반직5급상당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0	200		

[붙임 1]

< 별표3 신·구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 직급별	총계	의회 사무처	본 청 (직속 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기관별 / 직급별	총계	의회 사무처	본 청 (직속 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131				**총 계**	1,131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912				**일반직 계**	912			
3급	3		3		3급	3		3	
4급	15	1	14		4급	16	1	15	
5급 이하	892	-			5급 이하	891	-		
전문경력관	2	-			전문경력관	2	-		
별정직 계	4				**별정직 계**	4			
4급 상당	1		1		4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	3	-			5급상당이하	3	-		
연구직 계	1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연구사	1			
특정직 계 (교육전문직원)	213	-			**특정직 계 (교육전문직원)**	213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12		1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13		1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1	20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0	200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2.27., 2020.4.7.>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8.2.27.>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비용 발생과 관련된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 범위 내 조정으로 추가 소요비용이 대폭으로 발생하는 의안이 아님

4. 작성자: 정책국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조직예산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법무담당 송호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수연(044-320-1512)